

대한축구협회 선수중개인 관리규정

제·개·정·연·혁

- 2015년 3월 31일 제정

제 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대한축구협회(이하 '협회'라 함)에 등록된 선수 및 구단을 대리하여 선수의 고용계약(이하 '선수고용계약') 또는 이적계약에 중개하는 자의 등록절차, 활동범위 및 의무범위 등을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개인"이라 함은 만 19세 이상의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서 유상 또는 무상으로 선수 또는 구단의 위임을 받아 선수고용계약 또는 이적계약 등을 위해 중개 또는 협상을 하는 자를 말한다.
2. "미성년 선수"라 함은 만 18세 이하의 선수를 말한다.
3. "중개계약"이라 함은 선수고용계약을 목적으로 선수와 중개인간에 체결하는 계약과 이적계약을 목적으로 구단과 중개인간에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4. "선수의 이적"이라 함은 선수가 양도구단에서 양수구단으로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5. "보험"이라 함은 중개인이 선수 또는 구단을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본인 과실에 기인하여 의뢰인 혹은 거래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험회사와 체결한 계약을 말한다.
6. "선수고용계약"이라 함은 선수와 구단 간에 고용을 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7. "이면계약"이라 함은 동일 당사자 간에 동일한 목적을 위해 작성된 계약으로서 협회에 제출된 계약서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다른 모든 형태의 계약을 말한다.
8. "이적료"라 함은 선수와 구단 간의 계약 기간 중에 선수가 다른 구단으로 이적하는 경우 선수를 영입하는 구단이 선수의 전 소속 구단에게 지급하는 금원을 말한다.
9. "기본급여"라 함은 선수고용계약에 기초하여 어떤 조건의 성취여부에 관계없이 계약을

토대로 확정적으로 지급받도록 예정된 금원을 말한다.

10. "중개업무"라 함은 중개인이 선수고용계약 또는 이적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선수를 구단에 소개하거나 구단과 선수의 연봉 협상 등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중개계약 등의 독립성)

중개계약이 무효라 하더라도 그 무효인 계약을 토대로 체결된 선수고용계약 또는 이적계약은 유효하다.

제2장 등록절차 등

제4조(중개인 등록)

①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서 중개 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업무 개시 전(중개계약 체결 전)에 협회에 등록을 해야 한다.

② 중개인 등록은 연중 수시로 가능하다.

③ 중개인은 등록을 위해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1. 중개인 등록(갱신) 신청서(별첨 1)

2. 서명된 중개인 서약서(별첨 2)

3. 1개월 이내의 범죄사실증명서

4. 본 규정 19조에 의거한 보험가입(업무배상책임보험)

5. 법인 등록의 경우, 본 규정 4조 3항에 의거하여 실제 업무를 담당할 자의 등록서류

④ 중개인은 등록 승인 후 일주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등록비를 협회에 납부해야 한다. 법인의 중개업무 담당자가 수인인 경우, 그 인원에 아래 등록료를 곱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1. 신규 등록: 금 700,000원(USD 700.00)

2. 갱신 등록: 금 300,000원(USD 300.00)

⑤ 법인으로 등록하는 경우, 중개업무 담당자를 지정해야 하며, 등록 시 지정된 자 외에는 중개 업무를 할 수 없다.

제5조(등록의 효력)

등록의 효력기간은 협회 등록 완료 이후 개시되며 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6조(등록의 갱신)

갱신등록은 등록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신청해야 하며,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갱신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1. 신청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의 범죄사실증명서

2. 본 규정 19조에 의거한 보험가입(업무배상책임보험)

3. 법인 등록의 경우, 본 규정 6조에 의거하여 실제 업무를 담당할 자의 등록서류

제7조(중개인으로 활동할 수 없는 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협회에 중개인으로 등록할 수 없다.

1. 협회, 국제축구연맹, 각 대륙축구연맹, 시도축구협회 및 연맹의 임직원
2. 협회 등록된 팀의 임직원
3. 협회 등록된 팀의 지도자로 등록된 자
4. 협회 등록된 심판으로 활동 중인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3장 일반원칙

제8조(계약기간의 한도)

중개계약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조(중개인의 설명의무)

중개인은 중개계약 체결 전에 선수 또는 구단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1.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쌍방대리 또는 자기계약에 관한 사항
3. 중개인 보수에 관한 사항
4. 중개인 보수 산정에 관한 사항
5. 계약의 효력, 종료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자동연장에 관한 사항(본 조항이 계약내용에 포함된 경우)

제10조(쌍방대리 등의 금지)

중개인은 동일한 선수고용계약 또는 선수이적계약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을 위한 중개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선수와 구단 또는 양 구단에게 쌍방대리를 한다는 사실, 쌍방대리행위로 각 당사자들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보수 등을 서면으로 설명하고, 쌍방의 서면 동의를 모두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중개계약서의 제출의무 등)

- ① 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체결 후 그 내용을 변경한 경우 및 그 계약이 해지된 경우, 중개인, 선수 및 구단은 해당 계약서를 계약체결일(실제 서명날인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 ② 선수 및 구단은 중개인과 중개계약 이외에 중개인의 보수와 관련된 계약 (선수고용계약 및 이적계약)이 체결한 경우 그 계약서를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 ③ 중개인은 구단, 구단 임원, 지도자와 제1항 이외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그 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각 호의 계약서를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중개인이 구단 임원 혹은 코칭스태프와 계약 등을 한 경우 그 계약체결일
 2. 특정 개인이 중개인과의 계약 등을 체결한 후 그 계약만료 이전에 구단의 임원 혹은 코칭스태프로 된 경우 그 임명일

3. 구단 임원, 코칭스태프와 계약을 체결한 자가 중개인으로 등록을 한 경우 그 등록신청일

제12조(미등록 중개인과의 접촉금지)

선수 및 구단(임직원 포함)은 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중개인 등과 선수고용계약을 위한 협상 등을 해서는 안 된다.

제13조(이면계약금지)

중개인, 선수 및 구단(임직원 포함)은 이면계약을 체결하거나 그와 동일한 효과를 목적으로 한 합의 등을 해서는 안 된다.

제4장 중개계약

제14조(중개계약에 명시할 사항)

① 선수고용계약을 목적으로 한 중개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계약기간
- 2. 중개인의 의무범위
- 3. 중개인이 향후 수령할 보수
- 4. 위 보수 지급 시기
- 5. 위 보수 지급 방법

② 이적계약을 목적으로 한 중개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계약기간
- 2. 중개인의 의무범위
- 3. 중개인이 향후 수령할 보수
- 4. 위 보수 지급 시기
- 5. 위 보수 지급 방법

③ 미성년 선수와의 중개계약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5조(보수 및 보수의 지급방법 등)

① 중개인의 보수는 다음과 같이 중개인과의 협업에 관한 FIFA 규정 제 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권장한다.

- 1. 선수가 선수고용계약 체결을 위해 고용한 경우 중개인의 보수는 체결된 계약의 전체기간에 해당하는 선수 기본급여 3%로 한다.
- 2. 구단이 선수고용계약 체결을 위해 고용한 경우 중개인의 보수는 체결된 계약의 전체기간에 해당하는 선수 기본급여 3%로 한다.
- 3. 구단이 선수 이적체결을 위해 고용한 경우 중개인의 보수는 해당 선수 이적에 따른 이적료의 3%로 한다.

② 중개인의 보수를 정하지 않은 경우, 중개인은 선수 또는 구단으로부터 선수의 기본급여 또

는 이적료의 3%를 보수로 지급받을 수 있다.

③ 구단(임직원 포함)은 선수의 동의없이 선수의 연봉 등에서 중개인의 보수를 공제하여 중개인에게 중개보수를 직접 지급할 수 없다.

④ 훈련보상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구단(임직원 포함)은 중개인에게 훈련보상금 및 연대기여금을 지급해서는 안 되며, 이를 받을 권리가 있는 팀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

⑤ 미성년 선수를 대상으로 체결된 선수고용계약 및 이적의 경우 중개인은 선수 및 구단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을 수 없다. 단, K리그 등록 선수는 예외로 한다.

제5장 중개인 업무의 제한 등

제16조(중개 업무의 제한)

중개인(법인 포함), 중개인의 배우자(법인 업무담당자의 배우자), 중개인(법인의 업무담당자)의 2촌 이내의 친족(이하 '이해관계자'라 함)이 구단 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구단 등과 중개업무를 할 수 없다.

1. 이해관계자가 협상 대상 구단의 주식을 5%이상 소유한 경우
2. 이해관계자가 협상 구단의 임직원과 2촌 이내의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제17조(연계 중개의 요건)

중개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순차적으로 모두 충족한 경우에 다른 중개인과 협업하여 중개업무를 할 수 있다.

1. 선수 또는 구단의 동의를 받을 것
2. 연계 중개를 한다는 사실 협회에 통보할 것

제18조(중개인의 이익 공여금지)

① 중개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중개업무와 관련해 사회질서에서 용인되는 수준을 초과하는 금품, 선물 및 향응 등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1. 협회, 시도협회 및 연맹 임직원
2. 협회로부터 자격을 부여받은 지도자
3. 협회로부터 자격을 부여받은 심판

② 중개인은 중개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선수, 선수의 2촌 이내의 친족 및 구단 임직원에게 사회질서에서 용인되는 수준을 초과하는 금품, 선물 및 향응 등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제6장 보험가입의무

제19조(중개인의 보험가입의무)

① 중개인은 본 규정에 따른 업무활동 중에 고의 또는 과실로 선수 또는 구단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보험을 가입하고, 그 보험증서사본을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 ② 위 보험은 선수 등의 손해를 담보함에 있어 실효적인 것이어야 한다.

제7장 중개인 등의 공표

제20조(중개인 명단 등의 공표)

협회는 별첨2 서약서의 내용에 따라 중개인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1. 등록된 중개인(자연인 및 법인)의 성명
2. 징계를 받은 자의 성명
3. 징계의 종류, 기간, 등록정지 및 등록취소 관련 사항
4. 중개인이 관여한 선수고용계약 및 이적계약
5. 중개인이 받은 보수
6. 기타 중요한 사항

제8장 징계에 관한 사항

제21조(중개인에 대한 징계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회는 중개인을 징계할 수 있다.

1. 제4조를 위반한 경우
2. 제8조를 위반한 경우
3. 제9조를 위반한 경우
4. 제10조를 위반한 경우
5. 제11조를 위반한 경우
6. 제13조를 위반한 경우
7. 제14조 제3항을 위반한 경우
8. 제15조를 위반한 경우
9. 제16조를 위반한 경우
10. 제17조를 위반한 경우
11. 제18조를 위반한 경우
12. 제19조를 위반한 경우

② 법인의 업무 담당자가 본 규정 제22조 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자연인 이외에 법인도 징계할 수 있다.

제22조(선수 및 구단에 대한 징계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회는 선수 또는 구단을 징계할 수 있다.

1. 제8조를 위반한 경우
2. 제11조를 위반한 경우

3. 제12조를 위반한 경우
4. 제13조를 위반한 경우
5. 제15조를 위반한 경우
6. 제18조를 위반한 경우

제23조(구단 임직원에 대한 징계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회는 구단 임직원을 징계할 수 있다.

1. 제7조를 위반한 경우
2. 제8조를 위반한 경우
3. 제12조를 위반한 경우
4. 제13조를 위반한 경우
5. 제15조를 위반한 경우
6. 제18조를 위반한 경우

제24조(징계절차 등에 대한 규정의 적용)

본 규정 위반으로 인한 징계에 관한 사항은 협회 징계규정에 의한다.

제25조(규정의 적용순서)

본 규정과 국제축구연맹 중개인규정의 내용이 다른 경우, 본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부칙<2015. 3. 31.>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항) ①본 규정의 시행에 따라 FIFA 선수 에이전트 자격제도를 폐지하고 현존하는 자격증은 즉시 효력을 잃는다.

② 본 규정 시행 전에 에이전트 자격 등이 있는 자가 선수 등과 체결에이전트 계약은 유효하며(단, 이 계약을 토대로 협상 등은 진행할 수 없음), 위 에이전트 등은 본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않으면 새로운 중개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KFA 축구중개인 등록(갱신)신청서

1. 인적사항

성 명	(한글)	(영문)		사 진
소속(법인)		생년월일		
성 별		내/외국인		
연락처		E-mail		
주 소				

※ 영문 이름은 여권상 영문 이름과 동일해야 함

2. 경력사항

기 간	직 장	직 위	업무 내용

3. 등록 서류 제출사항 (유/무)

번호	서류	(유 / 무)	비고
1	등록(갱신) 신청서	(유 / 무)	
2	중개인 서약서	(유 / 무)	
3	범죄사실증명서	(유 / 무)	(발 급 일)
4	보험가입증명서	(유 / 무)	(보험기간) (보험회사)
5	등록비입금증	(유 / 무)	(입금자명)

중개인 서약서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국적:

주소(전화, 팩스 번호, 이메일 주소포함):

나,

중개인의 성명/법인(법인 담당자명)는

다음 내용에 동의한다:

1. 본인은 중개업무를 함에 있어 적용되는 국가의 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한다. 또한 본인은 중개업무를 함에 있어 협회, 각 대륙축구연맹 및 FIFA의 정관 및 규정을 준수한다.
2. 본인은 대한축구협회 중개인 규정 7조에 해당하는 임원이 아니며 가까운 미래에 임원이 될 계획이 없음을 서약한다.
3. 본인은 등록 신청 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전과가 없음을 서약한다.
4. 본인은 중개인과의 협업관련 FIFA 및 KFA 규정에 의거하여 잠재적인 이해의 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구단, 리그, 협회, 연맹 혹은 FIFA와의 계약 관계가 아님을 서약한다.
5. 본인은 중개인과의 협업에 관한 FIFA 규정 제 7조 4항 및 KFA 규정 제15조에 따라 한 구단에서 다른 구단으로의 이적에 따른 이적료, 연대기여금, 훈련보상금을 받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6. 본인은 중개인과의 협업에 관한 FIFA 규정 제 7조 8항 및 KFA 규정 15조에 의거하여 미성년자인 유소년 선수를 대상으로 체결된 모든 계약 및 이적의 경우 보수를 받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7. 본인은 축구 경기에 관련된 내기, 도박, 불법적인 토토 및 흡사한 사건에 관여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본인은 이와 같은 사건 혹은 거래에 관여하는 기업, 업체, 혹은 조직과 이해관계를 가지는 것이 금지되어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
8. 본인은 중개인과의 협업에 관한 FIFA 규정 및 본 규정에 의거하여 중개인으로서 구단 혹은

선수에게 받은 모든 금액에 관한 자료를 협회에게 제공할 것을 동의한다.

9. 본인은 중개인과의 협업에 관한 FIFA 및 본 규정을 준수하고, 리그, 협회, 각 대륙축구연맹 및 FIFA에게 중개인으로서의 모든 계약서, 동의서 및 기록을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다.
10. 본인은 중개인과의 협업에 관한 FIFA 규정 제 6조 및 본 규정 제 20조에 의거하여 본인의 자료를 수집 및 공표하는바에 동의한다.
11. 본인은 중개인과의 협업에 관한 본 규정 제 20조에 의거하여 협회가 본인의 제재에 관해 공표 및 FIFA에 보고하는 것에 동의한다.
12. 본인은 이 선언서가 협회 관계자에게 공개되는 바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동의한다.
13. 기타 의견 및 발언:

본 선언서를 제출함으로써 위에 제시된 내용의 변경 사항 발생시 즉각 협회에 공지할 것을 동의한다.

(장소 및 날짜)

(서명/날인)